

# Yeosu Web Contents

2024년 05월 05일 00시 57분



# 목차

목차	2
등록현황	3
임시시장 개설 등록의 취소	3

## 임시시장 개설 등록의 취소

2014.04.17 조회수 810 등록자 박종열

관리번호	전라남도 여수시-2010-0003
담당부서	도심개발사업단 도시디자인과
상위법령	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
조례	여수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18조
유형	2호 - 행정질서벌(허가취소 등)
등록사유	상공업
법령공표일	기존규제
존속기한	2005-12-29
규제시행/폐지일	2005-12-29
규제내용	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 1. 허위,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등록할 경우 2. 임시시장 등록신청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.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4.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

목록

이전글

전라남도 여수시-2010-0002

다음글

전라남도 여수시-2010-0004

# Yeosu Web Contents

